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45일 이내로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19632호, 2023. 8. 16. 공포, '24. 2. 17. 시행) 됨에 따라 심사·의결 기간 단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을 규정하고,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심사·의결 기간 연장 시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법률로 상향 규정된 중복 조항 삭제(현행 제12조의3제4항 삭제)
- 1)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법률에 상향 규정됨에 따라 중복 조항 삭제
- 나. 심사·의결 기간 단축 처리 연장 시 통지에 관한 규정(안 제12조의8)
-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 결정을 위한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기로 결정한 변경신청에 대해 심사·의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 변경위원회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변경신청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규정
- 다.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 요건 및 처리 절차 마련

(안 제12조의9 신설)

- 1) 변경신청의 중대성·시급성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을 정함.
- 2) 심사·의결 기간 단축을 위해 사실조사의 생략 또는 일부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3) 변경신청의 중대성·시급성의 인정 여부 결정 요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일을 그 심사·의결 기간 산정의 개시일로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8 본문 중 “법 제7조의5제3항”을 “법 제7조의5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의9부터 제12조의14까지를 제12조10부터 제12조의15까지로 하고, 제12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9(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의결 기간의 단축) ① 변경위원회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 기간 단축(이하 이 조에서 “기간단축”이라 한다.)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변경청구를 하거나 변경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작성한 기간단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검토하여 법 제7조의5제4항에 따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변경신청인의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 및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

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원시설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보호시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기관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변경위원회에 변경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변경청구 후 제1항의 자료를 별도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일을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로 본다.

④ 변경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단축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12조의11에 따른 사실조사를 생략하거나 그 일부만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영 제12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 등) ① ~ ③ (생략)	제12조의3(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변경신청인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변경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u><삭 제></u>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8(변경 결정의 연기에 관한 통지) 변경위원회는 법 제7조의5제3항 단서에 따라 심사·의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예정 기간을 변경신청인 및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8(변경 결정의 연기에 관한 통지) ----- 법 제7조의5제3항 및 제4항 ----- ----- ----- ----- ----- -----.
<u><신 설></u>	제12조의9(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의결 기간의

단축) ① 변경위원회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 기간 단축(이하 이 조에서 “기간단축”이라 한다.)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변경청구를 하거나 변경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작성한 기간단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검토하여 법 제7조의5제4항에 따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변경신청인의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 및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상담소, 같은 법 제12조

에 따른 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원시설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보호시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기관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변경위원회에 변경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변경청구 후 제1항의 자료를 별도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일을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로 본다.

④ 변경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단축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12조의11에 따른 사실조사를 생략하거나 그

제12조의9 ~ 제12조의14 (생략)

일부만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의10 ~ 제12조의15 (현행 제12조의9부터 제12조의14까지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6632